

1.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 및 채용

□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 절차

가. 선발 방법

- 선정 단체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해당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선발함

나. 응시 자격

-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 관련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 전공자
 - 문화예술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전공자(수료 이상)
 - 사회복지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전공자(수료 이상)
- 문화예술 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 유경험자(자원봉사 경험자 포함)
 -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 1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
 - 문화예술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
 - ※ 실무경력 및 자원봉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
- 고려사항
 - 단체 소재지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(광역시·도 기준) 우대
 -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 -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의 취업 취약계층 해당자 우대

* 취업취약계층

- ① 장기실업자(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, 청년은 졸업일 기준)
- ② 저소득층(최저생계비 150% 이하: 차차상위계층) ③ 고령자 ④ 장애인
- ⑤ 여성가장 ⑥ 결혼이민자 ⑦ 북한이탈주민

※ 공공부문 일자리사업(희망근로, 공공근로 등)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병행 불가

다. 심사 방법 및 기준

-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 측에서 심사위원 및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여 선정함
- 주요 심사 기준(안)
 - 전공 및 관련 분야 활동 경력

- 문화복지 관련 이해도 및 적극성
- 성실성 및 책임감
- 해당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

□ 문화복지 전문인력 채용 및 배치

가. 근로 계약 체결

- 계약 형태 : 표준근로계약 체결
- 근무 형태 : 「근로기준법」에 준함
 - ※ 4대 보험 가입은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함.

나. 전문인력 배치

- 단체별 전문인력 배치 및 근무
- 배치 기간 : 2014년 9월 ~ 2015년 2월

2. 문화복지 전문인력 운영 및 관리

□ 문화복지 전문인력 업무 부여

가. 전문인력 담당 업무

- 문화복지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
- 문화복지 대상자 요구 파악 및 관련 기관 네트워킹
-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 매개 및 운영 등 문화복지 관련 업무

나. 유의 사항

- 지원단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인력에게 상기 업무 외의 기관 단순 사무 및 행정 보조, 행사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
 - ※ 중대 위반 시 지원액 회수 및 사업 지원 중단 가능

※ 배치 인력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

-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
- 단순 회계 처리·문서 작성 등을 하는 지원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

□ 문화복지 전문인력 운영 및 관리

가. 근무환경 구축 및 인력관리 필수 사항

- 배치 인력 및 업무 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자 지정
- 배치 인력의 신분증 및 사무기기(책상, 컴퓨터, 전화 등)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근무 환경 구축
- 단체 측에서는 예술위 측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, 기타 프로그램에 전문인력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
- 지원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적 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
 - 전문인력 월별 업무 보고서 : 익월 10일까지 보고
 - 중간 실적 보고서 : 2014. 11. 30
 - 최종 실적 및 결과보고(정산 포함) : 2015. 2. 28

나. 급여 및 복리후생 관련 사항

- 지원단체는 전문인력에게 매월 150만원의 급여(4대 보험 및 세금 포함) 및 출장비(10만원 기준, 실비)를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함
- 전문인력은 주 5일 근무(1일 8시간 근무)를 원칙으로 하고,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
- 지원단체는 배치 인력에게 월 1회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, 휴일근로, 야간근로, 연차유급휴가수당 발생 시 이를 부담해야 함
- 지원단체는 배치 인력에 대한 4대 보험에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가입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함